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설현장 화물차주, 방과후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및 어린이통학버스기사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추가하고, 기존 화물차주의 적용 범위를 자동차 운송, 곡물·사료 운송, 택배 지·간선 운송 및 유통배송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새롭게 적용되거나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화물차주 및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에 대하여 노무수령인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보호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7. 6. ~ 8. 18.)

3) 행정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5호 중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퀵서비스업자”를 “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대리운전업자”를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람

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7조제12호 중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를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운전 등을 통해”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물차주”를 “화물차주(이하 “화물차주”라 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부터 제13호의4까지 및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

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16.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7.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제68조 중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의2호부터 제13의4호까지 및 제17호”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6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 위 등)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 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으 로서 <u>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 ·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 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u>	5. ----- ----- ----- --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u><신 설></u>	<u>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 전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서 집화(集貨) 또는 배송 (설치를 수반하는 배송을 포함한다) 업무를 하는 사 람</u>
<u><신 설></u>	<u>나. 가목 외의 택배사업(소화 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 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u>

	<u>업무를 하는 사람</u>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u>퀵서비스업자</u> 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 ----- ----- ----- <u>퀵서비스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사업주</u> ----- --
7.·8. (생략)	7.·8. (현행과 같음)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u>대리운전업자</u> 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9. ----- ----- <u>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u> -----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자가 소비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생 략)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
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
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

가. ~ 라.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11. (현행과 같음)

12. -----

----- 가전제품의 판
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시
운전 등을 통해 ---

13. -----
----- 화물차주(이하 “화물
차주”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
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
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
를 운송하는 사람

13의2.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
을 하는 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
업자(이하 이 조에서 “운수사

<신 설>

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화물차주

13의3.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나.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

<신 설>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 받아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
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
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자나 운수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 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3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8997